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553호
- 발 의 자 : 정진술 의원(찬성자 33명)
- 발의일자 : 2021년 8월 9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 2. 제안이유

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전시의 대면 관람이 어려워짐에 따라 장기간의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계를 위하여 2021.5.18.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관련 사항을 조례상 반영하여 변화하는 공연·전시 등의 환경에 대응하고, 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7조제2호).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5.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5가 신설됨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방역지침은 문화시설의 휴관 및 폐관, 공연·전시의 무기한 연기 및 취소를 가져왔으며, 이는 문화예술활동의 위축과 중단을 통해 문화예술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음.
-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응한 온라인 공연, 가상전시, 웹기반 축제 등과 같은 비대면·온라인 콘텐츠의 확산은 문화예술계에 관객 기반의 확대 및 새로운 수익모델 구축이라는 새로운 기회로 '온라인·비대면 콘텐츠'의 급격한 부상을 가져오고 있음.
- 반면에 온라인·비대면 콘텐츠의 창작·제작·유통·소비를 위한 기반 여건(시설·장비, 전문인력, 제작비용 등)의 취약성, 플랫폼의 확보, 저작권의 문제, 공정한 수익배분 구조의 미흡, 장르별 편차와 디지털 역량의 격차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예술인들의 온라인·비대면 콘텐츠 참여 경험률은 40.7%이나 향후 온라인·비대면 콘텐츠 창작·제작·유통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예술인의 비율이 69%고, 온라인·비대면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예술인의 56.5%가 제작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을 요구했음<sup>1)</sup>.
- 현재 서울시에서는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서울시립미술관,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등 6개 실국 및 기관에서 총 49개의 신규 및 기존 사업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문화본부 제1차 추경에서 ‘언택트 공연플랫폼 구축 및 비대면 공연거점 운영’으로 7억원이 편성되었고,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가 2022년 3월 개관을 앞두고 있음.

- 이에 서울시가 변화하는 공연·전시 등의 환경에 맞추어 온라인 공연·전시 등의 플랫폼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              |
|--------|--------------|
| 담당 조사관 | 연락처          |
| 이지영    | 02-2180-8115 |

1) 양혜원 외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 및 정책대응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연구2020-21

의안번호  
2553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 제 안 자                                                                                                                                                                                        |    | 제안일자            |    | 소관 상임위          |  |
|--------------------------|----------------------------------------------------------------------------------------------------------------------------------------------------------------------------------------------|----|-----------------|----|-----------------|--|
|                          | 정진술의원                                                                                                                                                                                        |    | 2021.8.9        |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
| 주요내용                     | ○ 코로나로 공연·전시 등의 제작형태가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5 신설에 따라,<br>○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br>○ 7조 2호 개정 : (현행) 예술인 활동기회 확대<br>→ (개정) 예술인 온,오프라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    |                 |    |                 |  |
| 추진경과                     | ○ '21.5.18 :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5(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신설<br>-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    |                 |  |
| 부 서<br>검 토 의 견           | 원안가결( ) / 수정가결 ( ○ ) / 부결( ) / 보류( )                                                                                                                                                         |    |                 |    |                 |  |
| 쟁점사항<br>(의회동향,<br>문제점 등) | ○ 같은 취지의 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37, 황규복의원외 2인 발의)이 발의되어 있어 상임위에서 대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br>○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 에서 신설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명시된 사업의 삭제 또는 변경이 아닌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                 |    |                 |  |
| 대응방안                     |                                                                                                                                                                                              |    |                 |    |                 |  |
| 상 임 위<br>처 리 결 과         |                                                                                                                                                                                              |    |                 |    |                 |  |
| 향 후 계 획                  |                                                                                                                                                                                              |    |                 |    |                 |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팀장 | 김정은(☎2133-2552) | 담당 | 이현중(☎2133-2553) |  |